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사 회 복 지 사 등 의 처 우 및 지 위  
향 상 을 위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보건복지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 1. 의결주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17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법인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27. ~ 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회복지법인 등”을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복지법인 등”을 “사회복지법인등”으로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4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4(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해

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u>공공기관</u> 또는 <u>사회복지법인</u>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u>사회복지법인</u>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생략)</p> <p>&lt;신 설&gt;</p>	<p>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 ----- ----- ----- ----- ----- ----- ----- ----- ----- ----- <u>공공기관</u>(「<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u>공공기관</u>을 말한다. 이하 같다) --- <u>법 제2조 각 호의 법인</u> 등(이하 “<u>사회복지법인등</u>”이라 한다)-----.</p> <p>② ----- ----- <u>사회복지법인등</u>----- -----.</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u> ① <u>법 제3조의2제1항</u> 본문에 따라 <u>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u>(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p>

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  
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  
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  
선 관련 시민단체(「비영  
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  
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  
다. 이하 같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신 설>

<신 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4(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신 설>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  
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  
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  
임·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  
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  
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연 락 처	(044) 202 - 3271